농축수산물 소비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 소비자]

이 콘텐츠에서는 식품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와 우수관리인증, 지리적표시, HACCP, 친환경농수산물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를 소개합니다. 이력관리제도와 같은 식품정보조회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불량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식품 등을 신고한 경우에 보상해주는 각종 신고포상금제도와 식품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해결방법 및 피해구제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농축수산물 소비자 1
1.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4
1.1.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4
1.1.1. 농축수산물 소비자 보호 4
1.2. 농축수산물 관리 5
1.2.1. 농산물 관리 5
1.2.2. 수산물 관리 7
1.2.3. 축산물 관리 9
2.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12
2.1.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12
2.1.1. 농산물 원산지표시 12
2.1.2. 농산물 이력추적제도 15
2.2. 인증제도 18
2.2.1. 친환경농산물 인증 18
2.2.2.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20
2.2.3. 농산물 지리적표시 21
2.3. 유전자변형 농산물 24
2.3.1.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24
3.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27
3.1.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27
3.1.1. 수산물 원산지표시 27
3.1.2. 수산물 이력추적제도 32
3.2. 인증제도 35
3.2.1. 친환경수산물 인증 35
3.2.2.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37
3.2.3.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 40
3.2.4. 수산물 지리적표시 42
3.3. 유전자변형 수산물 45
3.3.1.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표시 45
4.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48
4.1.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48
4.1.1. 축산물 이력관리 48
4.2. 인증제도 51
4.2.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51
4.3. 축산물 표시기준 등 52
4.3.1. 축산물 표시기준 52
4.3.2. 축산물 등급표시 55
4.3.3. 식육판매 표지 58
5.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61
5.1. 신고포상금 제도 61
5.1.1.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61
5.1.2.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63
5.2. 분쟁해결 64
5.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64
5.2.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65
5.2.3. 소송을 통한 해결 68

1.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1.1.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1.1.1. 농축수산물 소비자 보호

농축수산물 소비자 콘텐츠 소개

농축수산물 소비자 콘텐츠 제공 정보(분야)

- 『농축수산물 소비자』 콘텐츠에서는 농축수산물 소비자를 위한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분 야	세 부 내 용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관	■ 농축수산물 소비자 개요 ■ 농산물 관리 ■ 수산물 관리 ■ 축산물 관리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 원산지표시 ■ 이력추적관리 ■ 친환경농산물 인증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 지리적표시 ■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 원산지표시 ■ 이력추적관리 ■ 친환경수산물 인증 ■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 ■ 지리적표시 ■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축산물 표시기준 ■ 축산물 등급판정 ■ 식육판매 표지
분쟁 해결	■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 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 소송을 통한 해결

그 밖의 식품 소비자 관련 법령정보 제공

▪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 등 이 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법령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이란? ▪ 기능성 바로알기 ▪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고르기 ▪ 분쟁 해결

1.2. 농축수산물 관리

1.2.1. 농산물 관리

농산물이란?

"농산물"이란?

▪ "농산물"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

농산물 관리

▪ 정부는 농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키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이력추적관리제도,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지리적표시 제도,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표준규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하며, "등급규격"이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농산물 표준규격」 제2조제2호 및 제3호).

구 분	내 용
포장규격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릅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거래단위 ▪ 포장치수 ▪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 포장방법 ▪ 포장설계 ▪ 표시사항 ▪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급규격	농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은 「농산물 표준규격」 별표 5에 따릅니다(「농산물 표준규격」 제10조).

※ 농산물 표준규격정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업무소개 – 품질검사 표준규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 표준규격에 맞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면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① 품목, ② 산지, ③ 품종, ④ 생산연도(곡류만 해당), ⑤ 등급, ⑥ 무게(실중량) 및 ⑦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권장품질표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의 포장 겉면에 등급·당도 등 품질을 표시(이하 "권장품질표시"라 함)하는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2제1항).

▪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포장 겉면에 권장품질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2제2항).

▪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의2제3항).

비표준규격품의 혼합판매금지

▪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2호가목).

※ 농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

√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에게 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2항).

· 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농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4항).

1.2.2. 수산물 관리

수산물이란?

"수산물"이란?

▪ "수산물"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은 제외)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수산물 관리

▪ 정부는 수산물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높이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이력추적제도, 친환경수산물인증,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수산물 품질인증제도, 지리적표시,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표시 등과 같은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표준규격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 능률을 향상시키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 "포장규격"이란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하며, 등급규격이란 수산물의 품종별 특성에 따라 형태,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수산물 표준규격」 제2조제2호 및 제3호].

구 분	내 용
포장규격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릅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거래단위 ▪ 포장치수 ▪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 포장방법 ▪ 포장설계 ▪ 표시사항 ▪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급규격	수산물 종류별 등급규격은 「수산물 표준규격」 별표 5에 따릅니다[「수산물 표준규격」 제10조].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을 출하하는 자가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려면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표준규격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① 품목, ② 산지, ③ 품종, ④ 등급 ⑤ 무게(실중량), ⑥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비표준규격품의 혼합판매금지

▪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표준규격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2호가목).

> **※ 수산물의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

√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 해당 수산물의 생산자에게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2항).

· 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광산피해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수산물을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3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저장 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4항).

1.2.3. 축산물 관리

축산물이란?

"축산물"이란?

▪ "축산물"이란 식육(食肉)·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참조).

구 분	내 용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이나 그 밖의 부분
포장육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것
원유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
식용란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
식육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쇠기름), 식용돈지(돼지기름),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
유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분말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알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이나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피단

축산물 관리

▪정부는 축산물 유통개선을 통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상품성 향상과 공정한 거래의 실현 등을 위하여 축산물 이력관리,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표시기준 표시의무제도, 등급표시, 식육판매 표지 등과 같은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표준규격

-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의 기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다음의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
  -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함)
  -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함)
  -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유통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의 판매금지

- 표준규격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제2호).

2. 안전한 농산물 고르기

2.1. 원산지 및 생산자 표시

2.1.1. 농산물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

"원산지"란?

▪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채취된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표시 의무

▪ 다음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농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
-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산물

> ※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내 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산물이나 수출입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 기준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을 표시
수입 농산물과 반입 농산물	수입 농산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산물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 위 원산지표시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원산지표시 방법

▪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내 용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글자크기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음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그 밖의 사항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 농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 그 밖에 원산지표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유의사항

2026년 10월 22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구 분		내 용
시정명령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위반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 위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항제2호)
처분공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제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행정형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과징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 그 밖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농산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원산지표시위반 정보공표(농산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2. 농산물 이력추적제도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란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판매자는 제외)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대상품목을 등록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1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신청서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관리계획서
-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회수 조치 등 사후관리계획서

▪ 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구 분	등 록 사 항
생산자 (단순가공자 포함)	▪ 생산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 대상품목명 ▪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 ▪ 재배지의 주소
유통자	▪ 유통업체의 명칭 또는 유통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수확 후 관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리시설의 소재지
판매자	▪ 판매업체의 명칭 또는 판매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록 유효기간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인삼류는 5년 이내, 약용작물류는 6년 이내로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 ※ 농산물 이력추적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gap.go.kr),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절차 및 방법 등록절차-절차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추적관리 표시

▪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다음의 ① 표지와 ② 표시항목을 해당 농산물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6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

구분	표시사항
① 표지	
② 표시항목	▪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의 시·도나 시·군·구 단위를 적음 ▪ 품종(품종):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종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 중량·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 생산연도: 쌀과 현미만 해당(「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수확연도 표시) ▪ 생산자: 생산자 성명이나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붙여진 이력추적관리번호

▪ 위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표시위치	표시방법
포장·용기의 겉면 등	위의 ②의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표시항목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
농산물	표시대상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 등록 표지(위의 ①)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
송장이나 거래명세표	표시항목(위의 ① 및 ②)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
간판이나 차량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①의 표지를 표시

이력추적관리 등록 비용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제8항).

거짓표시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5호).

-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않은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1호 및 제2호마목).

※ 농산물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 확인 방법

·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이력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농산물 이력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 인증제도

2.2.1.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농산물"이란?

▪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친환경 농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와 같은 화학물질의 사용여부와 사용량 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로 구분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 참조).

구 분	내 용
유기농산물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로 사용해 재배한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 유기농산물 등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무농약농산물 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 등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 친환경 인증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nviag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

▪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그 포장 등에 다음과 같은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전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15).

구 분	국 문	영 문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6조제1항 후단).

▪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의해 허용된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4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및 제36조제2항).

부정 인증자에 대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를 받거나 공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 인증 또는 공시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2.2.2.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우수관리"란?

▪ "농산물 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포함)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4호).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

▪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사람은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 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은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gap.go.kr),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인증신청 절차 및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사항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에는 포장·용기·송장(送狀)·거래명세표·간판·차량 등에 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연도, 생산자(생산자집단명) 또는 우수관리시설명의 항목을 표시하고 아래와 같은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의 표지도형을 사용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구 분	국 문	영 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GAP (우수관리인증) 농림축산식품부	GAP MAFRA KOREA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가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려면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구 분	표시방법
①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위의 표지 및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로 제작하여 부착할 것(이 경우 아래의 ② 또는 ③의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음)
②	농산물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표시대상 농산물에 위의 표지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고, 아래의 ③에 따른 표시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
③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출하하거나 포장재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지 않고 출하하는 경우	송장(送狀)이나 거래명세표에 위의 표시항목을 적을 것
④	간판이나 차량에 우수관리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표지를 표시할 것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에 관한 정보 확인 방법

· 우수관리인증 기관, 우수관리인증 농가, 관리시설 등 우수관리인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GAP 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gap.go.kr)>에서 포장재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농산물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지리적표시"란?

"지리적표시"란 농산물의 명성·품질이나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8호).

※ 원산지표시 제도와의 비교

· 원산지표시는 특정 물품의 생산 지역을 나타내는 단순한 생산 지역이며, 이는 품질, 명성, 지리적요인 등과는 관련성이 없이 주어지는 표시입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참조]

구분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등록요건	지역성	필요	필요
	품질	지역에 기인한 품질특성 및 품질의 우수성 필요	불필요
	명성	필요	불필요
표시지역명		상품의 지리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정지역의 이름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

지리적표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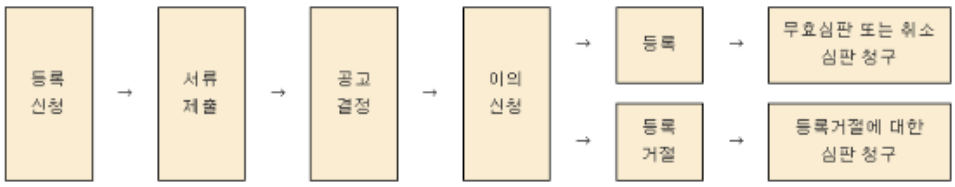
▪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함)는 등록한 농산물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1항).

▹ 지리적표시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각의 이해 당사자 상호 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2항).

	내 용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품종 명칭 또는 출원심사 중인 품종 명칭
4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산물(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함)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지리적표시의 등록

▪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참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업무소개 – 농식품인증 – 지리적표시 등록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표시

▪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본문 및 별표 15 제3호).

표 지	표 시 사 항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 주소(전화):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단서).

지리적표시권자의 보호

▪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2항).

	내 용
1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지리적표시만 해당)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2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
3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제1항).

지리적표시 위반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119조제3호).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4호).

2.3. 유전자변형 농산물

2.3.1.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표시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이란?

▪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의무

▪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농산물에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 및 제123조제1항제6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

▹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인 농산물이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2항제1호).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방법

▪ 유전자변형 농산물에는 해당 농산물이 유전자변형 농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7호).

> ※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거짓표시 등의 금지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의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표시의무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및 제117조).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위반에 대한 처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거짓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농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의 처분을 받은 자가 ① 표시위반물량이 100톤 이상인 농산물, ②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2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제2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 등을 하여 위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3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제2호).

	내 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	농산물의 명칭
5	위반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 그 밖에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수산물 고르기

3.1.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3.1.1. 수산물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의무

"원산지"란?

▪ "원산지"란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원산지표시 의무

▪ 다음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
-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수산물

> ※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내 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수산물이나 수출입 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기준

▪ 수산물의 원산지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내 용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
원양산 수산물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또는 '북빙양'의 해역명을 표시 ▪ 위에 따른 표시 외에 연안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표시와 함께 표시할 수 있음
수입수산물과 반입 수산물	수입 수산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수산물은 같은 법에 따른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 ※ 위 원산지표시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 방법

▪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내 용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음
글자크기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20포인트 이상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 12포인트 이상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음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
그 밖의 사항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해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음

▪ 수산물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 그 밖에 원산지표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 유의사항

2026년 10월 22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제재

구분		내용
시정 명령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위반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또는 ▪ 위반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3항제2호)
처분 공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위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제6조를 위반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해야 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행정 형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과징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를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됨(「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수산물에 대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 원산지표시위반 정보공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1.2. 수산물 이력추적제도

이력추적관리

"수산물 이력추적관리"란?

▪ "수산물 이력추적관리"란 수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수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7호).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수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이하 "이력추적관리"라 함)를 받으려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판매자 제외)

▪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28조제1항제1호).

1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산물로서 위해 발생의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산물
2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로서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3	그 밖에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수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이라 함)의 생산·출하·입고·출고 계획 등을 적은 관리계획서
- 이력추적관리수산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회수 조치 등을 적은 사후관리계획서

등록 유효기간

▪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양식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 ※ 수산물 이력추적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 품질관리 수산물이력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추적관리 표시

▪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자는 다음의 ① 표지와, ②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이력추적관리수산물에 표시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구 분	표 지
표지	

▪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는 다음의 방법에 따릅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및 별표 2).

표시위치	표시방법
포장·용기의 겉면 등	위의 표시사항(위의 ① 및 ②)을 인쇄하거나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할 것
수산물	표시대상 수산물에 위의 표시사항(위의 ① 및 ②)이 인쇄된 스티커, 표찰 등을 부착할 것
송장이나 거래명세표 (전자문서로 된 송장이나 거래명세표 포함)	위의 표시사항(위의 ① 및 ②)을 적어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받았음을 표시할 것
간판이나 차량	인쇄 등의 방법으로 위의 ①의 표지도표를 표시할 것

▪ 위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가 되어 있는 수산물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는 푯말 또는 표지판으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시내용은 포장 및 거래명세표 등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 ※ 그 밖에 이력추적관리수산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표시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이력추적관리수산물 및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이하 "이력표시수산물"이라 함)에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에 이력표시수산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 이력표시수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않은 수산물이나 수입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은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 이력표시수산물이 아닌 수산물을 이력표시수산물로 광고하거나 이력표시수산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

※ **수산물 이력추적에 관한 정보 확인 방법**

· 수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이력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산물 이력제 홈페이지(www.fishtrace.go.kr)>에서 수산물 이력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인증제도

3.2.1.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수산물 인증

친환경수산물의 의의 및 종류

▪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은 ① 유기수산물, ② 무항생제수산물 및 ③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친환경 수산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해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어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 유기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수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수산물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무항생제 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 수산물 등”이라 함)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가 무항생제 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수산물 등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 친환경 인증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nviag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수산물의 인증표시

▪ 유기수산물이나 무항생제 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그 포장 등에 다음과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전단,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2).

구분	국문	영문
유기 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36조제1항 후단).

▪ 유기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양수산부장관에 의해 허용된 제한적 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4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제23조제3항).

부정 인증자에 대한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어업자재의 공시를 받거나 공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 인증 또는 공시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3.2.2.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안전관리인증기준"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함)"란 수산물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 및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제1호).

HACCP 적용대상

생산·출하전단계수산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장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장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그 밖의 내수양식업 중 사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8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육상수조식수산종자생산장, 육상축제식수산종자생산장으로 허가를 받은 양식업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어류등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 축제식양식업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패류양식업 중 가두리양식업으로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양식업체

> ※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시설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민원시스템 홈페이지(www.nfqs.go.kr)-온라인 민원신청-HACCP 시설등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CCP 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선행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

1. 양식장 시설·설비관리
2. 양식장 위생관리

3. 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용수 관리

4. 의약품 관리

5. 사육 및 출하관리

6.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원칙과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제1항).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설정

3.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5.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방법 수립

6. 검증방법 수립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제2항).

	내 용	
1	HACCP팀 구성	▪ 조직 및 인력현황 ▪ HACCP팀 구성원별 역할 등
2	양식생물 설명서	▪ 양식생물명 ▪ 양식생물 용도 ▪ 작성자 및 작성 연월일 ▪ 양식생물 규격 ▪ 구매자, 출하처 및 출하 시 운반자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3	생산공정도 등	▪ 생산공정도 ▪ 양식장 평면도(사육동, 사육관리시설, 사육수조 등 시설·설비 배치) ▪ 용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가두리양식장에는 적용하지 않음)
4	위해요소의 분석	
5	중요관리점 설정	
6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수립	
7	모니터링 체계	
8	한계기준치 이탈 시 기록유지 및 개선조치 방법	
9	검증방법 수립	
10	문서화 및 기록유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로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1의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5조제3항).

HACCP 기준 이행의 표시

▪ HACCP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는 다음의 HACCP 심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 및 별표 2).



※ HACCP 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 대한 간판 및 생산된 수산물의 포장 등의 표시에 대한 사항은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ACCP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제재

▪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사업자가 해당 기준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8조제3호).

▪ 위에 따른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 명령, 생산·가공시설 등의 개선·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0조제9호).

※ **HACCP 인증 현황의 확인**

· 수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은 업체 및 품목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안전먹거리정보-HACCP 인증 업소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3.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

수산물 품질인증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란?

▪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1항).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

▪ 수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품질인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신청 품목의 생산계획서
- 신청 품목의 제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 그 밖에 수산물 품질인증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의 기준

▪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1. 해당 수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 해당 수산물의 품질 수준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시설·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3. 생산·출하 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제와 유통과정에서의 사후관리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수산물 품질인증 표지

▪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다음의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구 분	국 문	영 문
표지 도형	품질인증 (QUALITY SEAFOOD) 해양수산부	QUALITY SEAFOOD MOF KORE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 ※ 수산물 품질인증 표시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 방법

▪ 수산물 품질인증의 표시항목별 인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구 분	인 증 방 법
산지	해당 품목이 생산되는 시·군·구의 행정구역 명칭으로 인증하되, 신청인이 강·해역 등 특정지역의 명칭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음
품명	표준어로 인증하되, 그 명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식별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생태·형태·용도 등에 따라 산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으로 인증할 수 있음
생산자 또는 생산자 집단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주소 및 전화번호
생산조건	자연산과 양식산으로 인증

▪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의 포장·용기의 겉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입니다. 다만, 생산에서 출하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유효기간은 3년 또는 4년으로 하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거짓표시 등의 금지

▪ 누구든지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품질인증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9조제2항제3호).

▪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2호다목).

3.2.4. 수산물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지리적표시"란?

▪ "지리적표시"란 수산물의 명성·품질이나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8호).

> ※ **원산지표시 제도와의 비교**
>
> ▪ 원산지표시는 특정 물품의 생산 지역을 나타내는 단순한 생산 지역이며, 이는 품질, 명성, 지리적요인 등과는 관련성이 없이 주어지는 표시입니다(농식품정보누리 홈페이지(http://www.foodnuri.go.kr) 참조).

구분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등록요건	지역성	필요	필요
	품질	지역에 기인한 품질특성 및 품질의 우수성 필요	불필요
	명성	필요	불필요
표시지역명		상품의 지리적 특성이 드러나는 특정지역의 이름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

지리적표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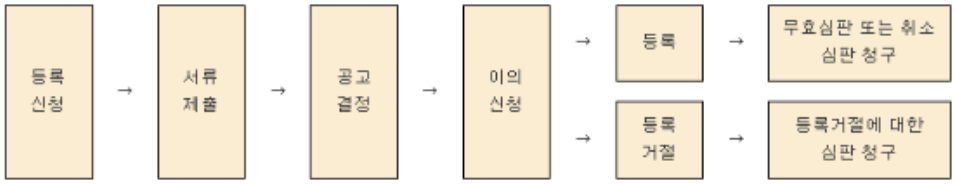
▪ 지리적표시를 등록한 자(이하 "지리적표시권자"라 함)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1항).

▪ 지리적표시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각의 이해 당사자 상호 간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2항).

	내 용
1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다만,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함)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또는 출원심사 중인 상표
3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수산물(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함)과 동일한 품목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록 대상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사용하는 지리적 명칭

지리적표시의 등록

▪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참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fqs.go.kr), 수산물인증-수산물인증 제도 안내-지리적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표시 수산물의 표시

▪ 지리적표시권자는 지리적표시품에 그 표시를 하려면 지리적표시품의 포장·용기의 겉면 등에 등록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의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본문 및 별표 15).

표 지	표 시 사 항
지리적표시 (PGI) 해양수산부	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 등록 제 호 생산자(등록법인의 명칭): 주소(전화):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지판 또는 푯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단서).

지리적표시권자의 보호

▪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6조제2항).

	내 용
1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인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지리적표시만 해당)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포장·용기·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2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는 행위
3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위조하거나 모조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리적표시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등록된 지리적표시품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7조제1항).

지리적표시 위반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119조제3호).

▪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제4호).

3.3. 유전자변형 수산물

3.3.1.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표시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표시

"유전자변형 수산물(GMO)"이란?

▪ "유전자변형 수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이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수산물을 말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의무

▪ 유전자변형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해당 수산물에 유전자변형 수산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이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제1항 및 제123조제1항제6호).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수산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방법

▪ 유전자변형 수산물에는 해당 수산물이 유전자변형 수산물임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표시하거나, 유전자변형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3조제1항제7호).

> ※ 유전자변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거짓표시 등의 금지

▪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의무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7조 및 제117조).

-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위반에 대한 처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 수산물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거짓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 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수산물의 판매 등 거래행위의 금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의 처분을 받은 자가 ① 표시위반물량이 10톤 이상인 수산물, ②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처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2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 등을 하여 위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9조제3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내 용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
4	수산물의 명칭
5	위반내용
6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4. 안전한 축산물 고르기

4.1. 생산지 및 생산자 표시

4.1.1. 축산물 이력관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이력관리"란?

▪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이력관리 대상 가축 및 축산물

▪ "이력관리대상 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합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

구 분	내 용
국내산이력축산물	①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 도살하여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함]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②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수입산이력축산물	√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함)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축산물 이력제

▪ 이력관리 대상 가축의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물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aunit.mtrace.go.kr), 사업소개-축산물이력제란? 참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내용

▪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은 사육, 도축, 수입 및 유통·판매의 네 단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18조까지 참조).

사육단계	농장식별번호 부여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 포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해야 함
	출생 등의 신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수입·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자를 말함),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함)은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함) 및 폐사,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 포함)·양수, 수입 및 수출, 거래하는 경우 등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개체식별번호 부여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함)하거나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귀표 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 등을 부착해야 함

↓

도축단계	귀표 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도축업자는 ① 귀표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돼지, ② 귀표 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소, 돼지, ③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 종돈 또는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닭, 오리는 도축할 수 없음
	도축 등의 신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이력번호의 표시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그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함

↓

수입단계	이력번호의 표시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해야 함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해야 함
	거래신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유통·판매 단계	포장 처리 및 거래 신고 등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및 이력관리대상 축산물판매업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함

※ 그 밖에 소와 돼지의 이력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http://aunit.mtrace.go.kr), 주요사업-축산물이력사업-축산물 이력제>에서 개체식별번호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인증제도

4.2.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란?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함]"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섞이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제1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대상 영업자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 중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해야 하는 영업자·농업인과 그 밖에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본문).

▪ 다만, 국외에 소재하여 축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자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이 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3조 단서).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품목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제1항 본문).

▪ 다만, 생산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합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제1항 단서).

> ※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 및 품목 정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FRESH 홈페이지(http://www.haccp.or.kr), 안전먹거리정보-HACCP인증 업소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

▪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작업장·업소·농장(축종)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0조제2항 본문).

▪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동 규칙 제7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0조제3항 본문).

>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FRESH 홈페이지(http://www.haccp.or.kr), HACCP-HACCP 절차안내-인증(연장)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 축산물 표시기준 등

4.3.1. 축산물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및 수입 축산물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 -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토종가축"이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을 말합니다(「축산법」 제2조제1호의2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 축산물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6. 성분명 및 함량
7. 용기·포장의 재질
8.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9.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10.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11. 포장일자

※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 축산물의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기준에 맞지 않는 축산물의 판매금지

▪ 위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1호, 제16조제3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호).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축산물에 다음과 같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

	내 용		
1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대상과 표시방법은 아래와 같음 * 표시대상 :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kg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주의사항 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표시.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2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20㎎/kg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 ㎎/kg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음		
3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에는 "고카페인 함유", "총카페인 함량 000밀리그램",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4	냉동축산물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또는 얼음류는 제외)		
5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6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은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7	당알코올류(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 등을 말한다)를 10% 이상(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 기준을 말함) 함유한 제품에는 "당알코올"을 표시하고,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8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다만, 용기·포장의 정보표시면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 가능)
9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등의 표시
10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에는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을 표시
11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에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의 금지

▪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축산물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축산물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축산물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의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위 4.부터 10.까지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 ※ 금지되는 축산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3.2. 축산물 등급표시

축산물의 등급표시

축산물의 등급표시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계란, 꿀과 소, 돼지, 말, 닭 및 오리 도체(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와 닭의 부분육에 대해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축산법」 제35조제1항 및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

쇠고기(소도체) 등급판정

▪ 소도체의 육질등급, 육량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축산물품질평가사업-축산물등급제 참조).

구분	육질등급	육량등급
개념	고기의 품질 수준	고기의 양
판정항목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도체중량
판정내용	근내지방도에 따른 예비등급을 기초로 품질을 종합하여 판정	육량산식에 따라 고기의 생산량을 구분 판정
등급표시	1++, 1+, 1, 2, 3, 등외	A, B, C

▪ 등급표시는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4와 같이 판정된 육질등급을 1++, 1+, 1, 2, 3으로 표시하고,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7조제1항 본문).

※ 다만, 등급판정 신청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판정된 육량등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7조제1항 단서).

> ※ 소도체의 육질등급 최종 판정 기준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돼지도체) 등급판정

▪ 돼지도체 등급판정방법은 인력등급판정 또는 기계등급판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돈개량,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냉도체 육질측정방법을 희망할 경우 측정항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8조제1항).

1차 판정	2차 판정	최종등급
• 성별 • 도체중량 • 등지방두께	• 외관: 비육상태, 삼겹살상태, 지방부착상태 • 육질: 지방침착도, 육색, 지방색, 육조직감, 지방질 • 결함: 근출혈, 근육제거, 외상 등	• 최종등급 부여 (1+, 1, 2, 등외)
• 축산법에 따라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는 등급판정 받은 후에 유통됩니다. • 1차 규격 등급과 2차 육질등급 판정을 거쳐 최종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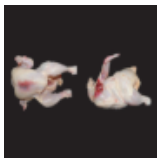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축산물품질평가사업-축산물등급제 참조>

▪ 돼지고기의 등급표시는 최종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1+, 1, 2를 도체에 표시합니다. 등외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등외를 도체에 표시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3조).

닭고기(닭도체) 등급판정

▪ 닭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4조제1항).

▪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3에 따르며, 닭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 등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별표 15에 따라 구분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닭고기 등급판정	
 <품질이 좋은 닭고기>	 <품질이 떨어지는 닭고기>
• 닭고기는 품질 차별화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등급판정합니다. • 닭도체의 외관, 비육상태, 지방부착, 잔털, 깃털, 신선도, 외상, 변색, 뼈의 상태에 따라 1+, 1, 2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합니다(부분육은 1, 2등급으로 구분 판정).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축산물품질평가사업-축산물등급제 참조>

▪ 닭도체의 등급표시는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등급판정일자, 평가기관명 등과 함께 표시합니다(「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제18조제1항).

닭고기 등급표시

포장용기에서 '등급판정' 표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 주요사업-축산물품질평가사업-축산물등급제 참조>

※ 소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외에 계란, 오리고기 등의 축산물 등급제도 및 등급판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http://www.eka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3. 식육판매 표지

식육판매 표지

원산지의 표시

▪ 국내산 또는 외국산(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 포함)으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산의 경우 괄호 내에 수출국을 표시합니다. 또한 국내산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식육은 괄호 내에 그 수출국을 함께 표시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3조).

식육종류의 표시

▪ 식육은 쇠고기, 돼지고기로 구분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한우고기·젖소고기·육우고기로 구분하여 원산지표시 다음에 괄호하여 표시합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4조제1항).

▪ 국내산 쇠고기의 종류를 구분하는 경우, 한우고기는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육우고기는 육우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와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말합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4조제2항).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

▪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분할상태에 따라 대분할과 소분할로 구별하며 그 부위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5조제1항 및 별표 1).

쇠고기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안 심	안심살
등 심	윗등심살
	꽃등심살
	아래등심살
	살치살
채 끝	채끝살
목 심	목심살
앞다리	꾸리살
	부채살
	앞다리살
	갈비덧살
	부채덮개살
우 둔	우둔살
	홍두깨살
설 도	보섭살
	설깃살
	설깃머리살
	도가니살
	삼각살

돼지고기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안 심	안심살
등 심	등심살
	알등심살
	등심덧살
목 심	목심살
앞다리	앞다리살
	앞사태살
	항정살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
뒷다리	볼기살
	설깃살
	도가니살
	홍두깨살
	보섭살
	뒷사태살
	삼겹살
	갈매기살

양 지	양지머리	삼겹살	등갈비
	차돌박이		토시살
	업진살		오돌삼겹
	업진안살	갈 비	갈비
	치마양지		갈비살
	치마살		마구리
	앞치마살		
사 태	앞사태		
	뒷사태		
	뭉치사태		
	아롱사태		
	상박살		
갈 비	본갈비		
	꽃갈비		
	참갈비		
	갈비살		
	마구리		
	토시살		
	안창살		
	제비추리		
10개 부위	**39개 부위**	**7개 부위**	**25개 부위**

식육판매 표지판의 설치

▪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등에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비닐에 그대로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9조제1항).

▪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별표 4의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제9조제2항).

5. 식품으로 인한 피해구제

5.1. 신고포상금 제도

5.1.1.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불량식품 신고방법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 분	신 고 방 법
전화신고	국번없이 1399
홈페이지 접속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부정불량식품신고 (https://www.foodsafetykorea.go.kr/)
그 밖의 방법	우편, 엽서, FAX 등

▪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되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

포상금의 지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제1항).

>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내용별 포상금 지급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부정불량식품신고-신고센터소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기준

▪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포상금의 지급한도

▪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지급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각 50만원, 시·도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 다만, 신고사항이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1호에 해당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포상금의 지급방법

▪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 다만,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여부만을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단서).

포상금 지급의 예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농업인이 자신이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5.1.2.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방법

▪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자민원시스템(www.agri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899-2112)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 포상금은 1000만원의 범위에서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

>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표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 포상금은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한 사건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1항).

-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지난 경우
-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1명당 월 1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지급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및 「(해양수산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5조제5항).

5.2. 분쟁해결

5.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품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대상이 되는 농축수산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1).

품 종	해 당 품 목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곡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과일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야채류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종묘등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 위의 농축수산물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의 해결기준에 따라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경비 배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참조).

▪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위의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해결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 ※ 그 밖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 직접해결 일반적 해결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2.2.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의 담당업무

▪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및 제35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합의권고),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상담

▪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 담 신 청 방 법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강원지원 방문
외국인 상담	☎ 043-880-5400
해외직구 피해관련상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접속하여 확인 (https://crossborder.kca.go.kr)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합의권고)

▪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구제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 분	피 해 구 제 신 청 방 법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 웹사이트 방문 (https://www.kca.go.kr/odr/pg/pr/cnSutList.do)
팩스신청	☎ 043-877-6767
그 밖의 방법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강원지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피해구제 절차도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됩니다.

▪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 소비자 분쟁조정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별도의 비용없이 합리적으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 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양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 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5.2.3. 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민사소송의 제기

▪ 부정·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 부정·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 가해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것
- 가해행위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손해가 발생할 것

민사소송의 효력

-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의 제기

-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및 제408조).
- 법원이 소비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단체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5조).
  -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에 의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 ※ 그 밖에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종류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비자분쟁해결-법원을 통해 해결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